

최저임금 인상의 가계소비 증대효과 분석

김재호*, 정주연**

최저임금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4%, 2019년은 전년 대비 10.9%가 결정되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증가와 소비,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의 진작을 가져왔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분위별 효과를 통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불평등의 완화라는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파악한다. 회고적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상하 10%를 범위로 최저임금 미만, 수급, 초과로 구분하였다.

최저임금 수급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임시직에서 최저임금 수급대상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수급자 비율도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미만 그룹에 속하는 비중도 50% 이상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증분석결과 2018년 최저임금인상은 가구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수급가구의 효과 역시 가구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위별 소득증대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1분위와 4분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2분위, 3분위, 5분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역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분석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임금근로자 가구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분위별 효과에서는 3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오히려 5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은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주요용어 : 최저임금, 가구소득, 가구소비

1. 서론

2000년대 초반까지도 5%를 유지하던 경제성장률이 최근에 2%로 하락하였다. 2011년 이후부터는 가계의 소비활동이 2%대 성장에 머물면서 민간소비 위축이 경제성장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부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거시적 관점에서 소득불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평등을 소비지출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홍정효, 2018).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은 소득불평등을 개선시켜 저소득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포스트케인즈안의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최근의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 둔화를 총수요측면의 내수와 소비부족 그리고 소득분배 불균형으로 보고 근로자의 임금을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증대시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가계소비가 경제성장(GDP)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가계소비(민간소비)의 결정요인은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기변동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소득 불평등 완화와 가계소득 증가로 가계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수단으로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했다. 1988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게 단체교섭보다 유용한 임금조정방식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정진호 외, 2011).

2010년 이후 평균 5~7%정도의 인상률을 보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4%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며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¹⁾, 2019년은 전년 대비 10.9%가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증가와 소비,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로 이어지면서 2020년에는 2.9%인상(8,590원)으로 속도를 줄였으며 2021년에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공시되었다. 2010년부터 기존의 최저임금의 인상율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 2016년에는 8.3%의 인상율을 보였고 2017년에도 7.3%의 인상율을 보였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연평균증가율을 2017년을 기준으로 계측하면 2021년 7.7% 증가로 추세적으로 살펴볼 때 이전의 증가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2018년, 2019년의 갑작스런 충격으로 노동시장의 왜곡이 예상된다.

1)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60원(16.4%)이 인상되면서 시급 7,530원으로 이를 월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573,770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221,540원 인상분에 해당된다(조은영, 김상미, 2018)

<표 1> 최저임금 수준 및 인상율

(단위: 원, %)

구분	시급		월급		전년대비인상율	CGAR (2017년기준)
	금액	인상액	금액	인상액		
2021년	8,720	130	1,822,480	27,170	1.5	7.7
2020년	8,590	240	1,795,310	50,160	2.9	9.9
2019년	8,350	820	1,745,150	171,380	10.9	13.6
2018년	7,530	1,060	1,573,770	221,540	16.4	16.4
2017년	6,470	440	1,352,230	91,960	7.3	-
2016년	6,030	450	1,260,270	94,0560	8.3	-
2015년	5,580	370	1,166,220	77,330	7.1	
2014년	5,210	350	1,088,890	73,150	7.2	
2013년	4,860	280	1,015,740	58,520	6.1	
2012년	4,580	260	957,220	54,340	6.0	
2011년	4,320	210	902,880	43,890	5.1	
2010년	4,110	-	858,990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의 진작을 가져왔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득분위별 귀착을 통해 불평등의 완화라는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파악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효과와 소득불평등 효과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비와 관련한 추정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드물다. 국외 연구로는 유일하게 Aaronson et al.(2012)의 연구가 Consumer Expenditure Survey 등을 패널화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많은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다. Aaronson et al.(2012)는 각 가구의 성인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최저임금 인상 전후의 소비변화 차이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소비증가 효과가 거의 없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로는 오상봉(2015), 조은영·김상미(2018), 황희영(2019), 조경엽(2018), 이경호·김지환·최지훈(2019), 황선웅(2019) 등이 최저임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먼저 오상봉(2015)은 최저임금

인상 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비변화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구의 소비변화 차이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비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했음에도 가구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득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소득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임금변화를 살펴보니 최저임금의 95% 미만을 받던 근로자의 50%는 다음 해에도 계속 최저임금의 95% 미만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문제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준수율이 4~5%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가구소비를 증가시킨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²⁾. 조은영·김상미(2018) 연구는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려는 정부계획의 최저임금 인상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물가상승을 촉진하면서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자 수의 감소가 크지는 않지만 노동공급의 증가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처음에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갈수록 효과가 누적되면서 실질 GDP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황희영(2019)은 최저임금 수준 및 영향력 대응변수로 Kaitz 지수³⁾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제도가 소비, 투자 및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제도는 소비와 투자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소비에 대한 최저임금제의 정(+)⁴⁾의 효과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자에는 부분적으로 부(-)의 영향을 보이며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투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로 내수경제에 정(+)⁵⁾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효과가 발생할 경우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영향력은 임금 인상에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점진적인 인상과 따른 고용의 안정화와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임금지원 정책과 경제 주체들의 기대심리 회복을 위한 전략을 함께 병행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에 관한 연구로 이경호·김지환·최지훈(2019)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높

2) 항상소득가설은 소비가 현재의 소득수준보다 항상소득(미래에 기대되는 소득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가계의 경우 항상소득에 기초하여 각 기별 소비를 평탄화(smoothing)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소득의 감소는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Kaitz 지수 1 = 시간당 평균정액급여대비 시간당 최저임금×취업자수 대비 임시, 일용직 취업자수×제도적 적용률

Kaitz 지수 2 = 시간당 평균정액급여대비 시간당 최저임금×전산업 고용량 대비 대상 그룹의 고용량×제도적 적용률

은 경직성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신규근로자에게 전이될 수 있고, 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으로 기업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2008년~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 고용을 감소시키고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신규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에 취약한 계층인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고졸 이하 등 저임금·저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큰 집단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로 조경엽(2018)은 완전동태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특성, 최저임금 대상자의 구성, 고용구조⁴⁾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확대는 당연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로 근로장려금을 반납하거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증가 없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⁵⁾. 황선웅(2019)은 가구별 최저임금 영향률 차이를 이용한 비선형 이중차분모형을 추정한 결과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가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자료 및 기술통계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수급이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KLIPS는 최근 22차(2019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20~2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며, 분석기간은 2017년과 2018년이다. 그 결과 2017년 5,811가구, 2018년에 8,793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노동패널에서 가구소득은 조사시점의 전년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진소득, 기타소득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가계소비 역시 작년 한 해 동안 소비한 생활비로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비, 보건의료비,

4)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중소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이 업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들 사업체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임

5) 최저임금은 근로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득분배는 일반적으로 가구를 단위로 한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반드시 빈곤가구나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저임금제를 빈곤정책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만약 최저임금 수혜자들이 저소득 가구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빈곤극복이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통통신비 등 생활하는데 드는 돈을 의미한다.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는 소득이나 소비와는 달리 해당년도의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따라서 소득, 소비와 자산변수의 시계열적 일치를 선행하였으며, 모든 명목변수(가계소득, 소비, 임금, 자산)은 소비자물가지수⁶⁾를 반영하여 2015년을 기준으로 실질화하였다. 최저임금(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세후)에 공제되는 세금을 더하여 세전월평균 임금을 구한 뒤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했다. 또한 개인특성 통제변수로는 연령, 연령제곱, 성별더미(남성=1, 여성=0), 학력은 교육년수로 하였으며, 가구 특성 통제변수로는 가구원수, 거주지역, 소득5분위 더미를 이용하였다. 소득5분위 더미는 균등화소득을 이용하여 구분하였는데 균등화소득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최저임금의 수급자를 정의하기 위해 근로자의 세전임금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회고적 조사의 특성상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년 공시되는 최저임금의 0~90% 수준(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의 90~110% 수준(최저임금 수급), 최저임금의 110%이상(최저임금 초과)로 구분하였다. 최저임금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최저임금 수급자 그룹과 최저임금 미수급(미만, 초과)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6)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 기준=100) 2015년 100.0, 2016년 101.0, 2017년 103.0, 2018년 104.5를 반영하였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 구성 및 설명
소비지출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내구재구입비, 통신비, 피복비, 대중교통비, 생필품구입비 포함
가계연간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으로 자영업자의 소득도 포함
금융소득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투자소득,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입, 주식, 채권 매매차익, 배당금, 기타
부동산소득	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를 도지준 것, 권리금, 기타
사회보험소득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
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기타 정부보조금, 근로장려세제, 사회단체보조금, 친척/친지 보조금,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 기타
기타소득	보험금(손해, 저축성, 종신), 퇴직금, 증여/상속, 축의금, 조의금, 당첨상금, 재해보상금, 기타
가계총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가계총부채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타고 앞으로 부여야 할 갯돈 등
가구주 성별	남성=0, 여성=1
가구주 연령	연령
가구주 학력	교육년수로 환산(미취학, 무학=0, 초졸=6, 중졸=9, 고졸=12, 2년제=14, 4년제=16, 대학원석사=18, 대학원박사=21)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거주지역	수도권 외=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1
종사상지위	상용직=0, 임시직=1, 일용직=2
연도 더미	2017=0, 2018년=1
최저임금	월평균임금/근로시간

2. 최저임금 수급 근로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전체 최저임금의 90%미만을 최저임금 미만, 90~110%를 최저임금 수급, 최저임금의 110%이상을 최저임금 초과로 구분하였다. 2017년 최저임금 수급자는 7.6%에 해당하며 미만은 6.2%, 초과는 86.2%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간 2018년에는 수급가구가 8.2%로 다소 증가했으며 미만이 8.0%로 역시 증가했으며 초과는 83.7%로 감소했다.

<표 3> 최저임금수급유형별 비율

구분	2017				2018			
	미만	수급	초과	소계	미만	수급	초과	소계
근로자수	358	444	5,009	5,811	706	723	7,364	8,793
비율	(6.2)	(7.6)	(86.2)	(100.0)	(8.0)	(8.2)	(83.7)	(100.0)

<표 4>는 최저임금수급유형별 근로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을 보면, 최저임금 미만그룹은 여성이 초과그룹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을 수급하는 그룹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남성 수급자 비중은 줄어든 반면, 여성수급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수급자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50대에서도 최저임금 수급자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대가 30대에 비해 최저임금 수급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수급대상자와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최저임금 수급자 비중이 증가한 것은 가구주의 배우자가 3%정도 증가하였으며, 다른 가구원들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보면, 임시직에서 최저임금 미만과 최저임금 수급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일용직보다 임시직에서 저임금근로자가 더 많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가구원 수를 이용하여 균등화지수를 구한 후 가구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 수급자가 어느 소득분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수급자의 40% 이상이 1분위에서 속해있었다. 또한 1분위에는 최저임금 미만그룹도 50%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일수록 최저임금 초과그룹에 속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최저임금 수급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임시직에서 최저임금 수급대상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수급자 비율도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미만 그룹에 속하는 비중도 50% 이상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4> 임금근로자의 특성

(단위: %)

		2017년			2018년		
		미만	수급	초과	미만	수급	초과
성별	남성	0.39 (0.488)	0.31 (0.461)	0.61 (0.487)	0.40 (0.489)	0.29 (0.456)	0.61 (0.487)
	여성	0.61 (0.488)	0.69 (0.461)	0.39 (0.487)	0.60 (0.489)	0.71 (0.456)	0.39 (0.487)
연령	20대	0.10 (0.297)	0.13 (0.337)	0.12 (0.320)	0.08 (0.279)	0.13 (0.333)	0.11 (0.318)
	30대	0.08 (0.277)	0.09 (0.290)	0.27 (0.444)	0.08 (0.275)	0.10 (0.301)	0.25 (0.434)
	40대	0.11 (0.315)	0.17 (0.379)	0.31 (0.463)	0.11 (0.317)	0.14 (0.345)	0.29 (0.456)
	50대	0.18 (0.388)	0.24 (0.428)	0.20 (0.401)	0.15 (0.362)	0.23 (0.419)	0.22 (0.411)
	60대 이상	0.52 (0.500)	0.36 (0.481)	0.10 (0.303)	0.57 (0.496)	0.41 (0.492)	0.12 (0.329)
학력(교육년수)		10.05 (3.987)	10.77 (3.557)	13.65 (2.804)	10.22 (3.879)	10.72 (3.616)	13.58 (2.869)
거주지역	수도권 외	0.59 (0.492)	0.54 (0.499)	0.49 (0.500)	0.53 (0.499)	0.54 (0.498)	0.48 (0.499)
	수도권	0.41 (0.492)	0.46 (0.499)	0.51 (0.500)	0.47 (0.499)	0.46 (0.498)	0.52 (0.499)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0.54 (0.499)	0.45 (0.498)	0.59 (0.492)	0.55 (0.497)	0.43 (0.496)	0.60 (0.491)
	배우자	0.33 (0.472)	0.36 (0.482)	0.26 (0.438)	0.33 (0.469)	0.39 (0.488)	0.25 (0.432)
	자녀	0.09 (0.290)	0.15 (0.361)	0.14 (0.351)	0.10 (0.305)	0.15 (0.353)	0.14 (0.349)
	기타	0.03 (0.180)	0.04 (0.187)	0.01 (0.105)	0.02 (0.129)	0.03 (0.176)	0.01 (0.108)
종사상지위	상용직	0.33 (0.472)	0.36 (0.481)	0.79 (0.409)	0.33 (0.472)	0.41 (0.492)	0.78 (0.413)
	임시직	0.47 (0.500)	0.45 (0.498)	0.13 (0.333)	0.45 (0.498)	0.46 (0.498)	0.14 (0.343)
	일용직	0.20 (0.397)	0.19 (0.396)	0.09 (0.280)	0.22 (0.412)	0.13 (0.341)	0.08 (0.274)
소득5분위	1분위	0.55 (0.498)	0.40 (0.491)	0.16 (0.363)	0.50 (0.500)	0.40 (0.489)	0.15 (0.358)
	2분위	0.19 (0.391)	0.25 (0.436)	0.20 (0.397)	0.23 (0.420)	0.24 (0.424)	0.20 (0.398)
	3분위	0.14 (0.350)	0.17 (0.375)	0.21 (0.406)	0.14 (0.346)	0.18 (0.388)	0.20 (0.403)
	4분위	0.07 (0.255)	0.09 (0.290)	0.22 (0.413)	0.09 (0.293)	0.12 (0.321)	0.22 (0.414)
	5분위	0.05 (0.219)	0.08 (0.273)	0.22 (0.415)	0.04 (0.185)	0.07 (0.254)	0.23 (0.419)
표본수		358	444	5,009	706	723	7,364

*자료: 한국노동패널 20~22차

IV. 실증분석

1. 분석모형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아래 식(1)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C_{it} = \alpha + \beta_1 year + \beta_2 treat + \beta_3 year * treat + \beta_4 x_{it} + \beta_5 z_i + \varepsilon_{it} \quad (1)$$

여기서 i 는 개별가구, $year$ 는 최저임금 인상 전후를 나타내는 연도 더미로 2017년=0, 2018년=1, $treat$ 는 최저임금 더미변수로 최저임금 수급 가구=1, 최저임금 미수급 가구=0(최저임금 미만, 초과 가구), β_2 는 최저임금이 가구소비(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추정계수이며, x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가구 i 의 특성 변수(가구총소득, 가구원 수, 자산 등), z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가구 i 의 특성 변수(성별, 학력 등)를 의미한다.

2. 분석결과

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정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도더미와 최저임금 수급여부의 교호항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수급가구의 효과 역시 가구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최저임금인상이 전체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임금근로자 5,502가구를 대상으로 자산의 통제여부에 따라 모형1과 모형2로 구분하여 이중차이(DID)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저임금의 가구분위별 소득인상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균등화된 가구소득을 기초로 5분위로 나누어 역시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가구자산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1에서 기존의 연구와 동일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한계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종사상지위가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의 순으로 가구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거주지역, 연도더미, 최저임금 수급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못했다. 역시 2018년 최저임금의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연도더미*최저임금수급여부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통제한 모형2에서도 모형1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모형2의 금융

자산과 부동산자산의 자연대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최저임금의 분위별 소득증대 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1분위와 4분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2분위, 3분위, 5분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1분위에서는 가구주 성별, 연령, 가구원수, 종사상지위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학력과 거주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효과를 나타낸 연도더미*최저임금수급여부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최저임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또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분위에서는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수, 거주지역, 종사상지위 중 일용직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최저임금의 효과는 1분위와 다르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3분위에서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자연대수값을 포함해 가구주의 성별, 연령, 가구원수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4분위에서는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수, 종사상지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가구원수,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자연대수값, 그리고 연도더미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소득집단인 5분위에서는 가구주의 성별, 학력 중 대졸이상, 가구원수,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자연대수값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모든 분위에서 연도더미는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며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가구소득이 오히려 줄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정결과

	전체		분위별				
	(1)	(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주성별 (여성=0, 남성=1)	0.1966*** (0.019)	0.1759*** (0.018)	0.1327*** (0.026)	0.0381*** (0.007)	0.0211*** (0.008)	0.0127 (0.009)	-0.0567* (0.030)
가구주연령	0.0578*** (0.004)	0.0493*** (0.004)	0.0196*** (0.005)	0.0048*** (0.002)	0.0044** (0.002)	0.0016 (0.002)	-0.0007 (0.009)
연령제곱	-0.0006*** (0.000)	-0.0005*** (0.000)	-0.0002*** (0.000)	-0.0000** (0.000)	-0.0000* (0.000)	-0.0000 (0.000)	0.0000 (0.000)
고졸	0.1473*** (0.023)	0.1329*** (0.023)	0.0422 (0.030)	-0.0098 (0.009)	-0.0017 (0.010)	-0.0017 (0.012)	0.0379 (0.050)
학력(중졸이하=1) 전문대졸	0.2339*** (0.030)	0.1903*** (0.028)	0.0566 (0.043)	-0.0004 (0.011)	0.0137 (0.012)	0.0050 (0.014)	0.0526 (0.054)
대졸이상	0.3841*** (0.026)	0.3305*** (0.026)	0.0116 (0.038)	-0.0017 (0.010)	0.0140 (0.011)	0.0111 (0.013)	0.1243** (0.051)
가구원수	0.1721*** (0.006)	0.1589*** (0.006)	0.1936*** (0.010)	0.1985*** (0.002)	0.1974*** (0.002)	0.2046*** (0.003)	0.1666*** (0.009)
거주지역 (수도권 외=0, 수도권=1)	-0.0078 (0.013)	0.0201 (0.013)	0.0103 (0.021)	0.0089* (0.005)	0.0071 (0.005)	0.0008 (0.006)	-0.0010 (0.018)
중사상지위 (상용직=1) 임시직	-0.2449*** (0.020)	-0.2186*** (0.019)	-0.1223*** (0.028)	-0.0108 (0.008)	0.0042 (0.009)	0.0008 (0.010)	0.0306 (0.042)
일용직	-0.2793*** (0.021)	-0.2349*** (0.021)	-0.1272*** (0.030)	-0.0173** (0.008)	-0.0142 (0.009)	-0.0157 (0.011)	-0.0758 (0.047)
금융자산	-	0.0262*** (0.002)	0.0102*** (0.003)	0.0036*** (0.001)	0.0018** (0.001)	-0.0002 (0.001)	0.0068* (0.003)
부동산자산	-	0.0139*** (0.001)	0.0045** (0.002)	0.0014*** (0.001)	0.0031*** (0.001)	0.0021*** (0.001)	0.0038* (0.002)
연도더미 (2017=0, 2018=1)	-0.0053 (0.007)	-0.0094 (0.007)	-0.0600*** (0.017)	-0.0367*** (0.004)	-0.0118*** (0.004)	-0.0145*** (0.004)	-0.0308** (0.012)
최저임금 수급여부 (미수급=0, 수급=1)	-0.0256 (0.022)	-0.0177 (0.022)	-0.0214 (0.038)	0.0062 (0.011)	0.0101 (0.012)	-0.0029 (0.018)	0.0108 (0.064)
연도더미*최저임금 수급여부	0.0338 (0.027)	0.0290 (0.027)	0.0567 (0.047)	-0.0001 (0.014)	0.0050 (0.016)	-0.0042 (0.021)	-0.0969 (0.073)
Constant	6.1466*** (0.093)	6.2246*** (0.090)	6.5788*** (0.136)	7.4490*** (0.036)	7.7013*** (0.041)	8.0304*** (0.050)	8.5334*** (0.189)
Observations	8,464	8,464	2,011	1,912	1,638	1,518	1,385
Number of pid	5,502	5,502	1,586	1,575	1,374	1,244	1,018

주: *** p<0.01, ** p<0.05, * p<0.1

나.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추정

최저임금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표 5>에서 처럼 임금근로자 전체 가구와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였으며, 설명변수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자연대수값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2가지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임금근로자 가구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분위별 효과에서는 3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오히려 5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모형1과 모형2에서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연령, 학력수준, 가구원수, 거주지역, 종사상지위, 가구소득,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연도더미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효과는 가구주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계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종사상지위가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의 순으로, 가구소득, 금융자산, 부동산자산이 높을수록 가구소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소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분위별 효과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수준, 가구원수, 거주지역, 종사상지위, 가구소득, 부동산자산, 연도더미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연도더미*최저임금수급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2분위에서는 가구주 성별, 연령, 학력수준, 가구원수, 거주지역, 종사상지위 중 임시직, 가구소득, 금융자산, 부동산자산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고 연도더미*최저임금수급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3분위에서는 가구주 성별, 연령, 학력수준, 가구원수,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분위와 다르게 종사상지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도더미*최저임금수급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분위에서는 가구주 성별, 연령, 학력변수 중 전문대졸 이상, 가구원수, 거주지역, 종사상지위, 가구소득, 자산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며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분위에서는 가구주 연령과 학력 중 전문대졸 이상, 가구원수, 거주지역, 종사상지위, 그리고 가구소득과 금융자산에서 통계적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분위와 다르게 부동산자산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더미*최저임금수급여부의 효과가 5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6>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추정결과

	전체		분위별				
	(1)	(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주성별 (여성=0, 남성=1)	0.1549*** (0.013)	0.0746*** (0.010)	0.0898*** (0.018)	0.0503*** (0.017)	0.0597*** (0.019)	0.0550** (0.022)	0.0159 (0.030)
가구주연령	0.0558*** (0.003)	0.0322*** (0.002)	0.0215*** (0.004)	0.0256*** (0.004)	0.0317*** (0.004)	0.0391*** (0.005)	0.0669*** (0.008)
연령제곱	-0.0006*** (0.000)	-0.0003*** (0.000)	-0.0002*** (0.000)	-0.0003*** (0.000)	-0.0003*** (0.000)	-0.0004*** (0.000)	-0.0007*** (0.000)
고졸	0.1535*** (0.016)	0.0965*** (0.012)	0.1142*** (0.021)	0.0486** (0.021)	0.0948*** (0.023)	0.0415 (0.030)	0.0484 (0.049)
학력(중졸이하=1) 전문대졸	0.2442*** (0.020)	0.1467*** (0.015)	0.1394*** (0.030)	0.0884*** (0.026)	0.1270*** (0.028)	0.0782** (0.035)	0.1540*** (0.054)
대졸이상	0.3543*** (0.018)	0.2008*** (0.014)	0.1977*** (0.027)	0.1004*** (0.025)	0.1620*** (0.026)	0.1354*** (0.032)	0.1962*** (0.051)
가구원수	0.2001*** (0.004)	0.1351*** (0.003)	0.1638*** (0.008)	0.0867*** (0.012)	0.0748*** (0.013)	0.1104*** (0.015)	0.1689*** (0.010)
거주지역 (수도권 외=0, 수도권=1)	0.0322*** (0.009)	0.0425*** (0.007)	0.0628*** (0.015)	0.0304** (0.012)	0.0427*** (0.013)	0.0210 (0.014)	0.0631*** (0.018)
종사상지위(상용직=1) 임시직	-0.1429*** (0.013)	-0.0534*** (0.011)	-0.0537*** (0.019)	-0.0374** (0.019)	-0.0263 (0.023)	-0.0659*** (0.026)	-0.0706* (0.041)
종사상지위(상용직=1) 일용직	-0.1867*** (0.014)	-0.0789*** (0.012)	-0.1221*** (0.021)	-0.0280 (0.020)	-0.0056 (0.022)	-0.0552* (0.028)	-0.0873* (0.047)
가구소득	-	0.3613*** (0.006)	0.1996*** (0.015)	0.6026*** (0.053)	0.6786*** (0.062)	0.5346*** (0.066)	0.1428*** (0.026)
금융자산	-	0.0035*** (0.001)	0.0050** (0.002)	-0.0041** (0.002)	0.0013 (0.002)	-0.0056** (0.003)	0.0090*** (0.003)
부동산자산	-	0.0056*** (0.001)	0.0063*** (0.002)	0.0025** (0.001)	0.0041*** (0.001)	0.0046*** (0.002)	0.0025 (0.002)
연도더미 (2017=0, 2018=1)	0.0098** (0.005)	0.0122*** (0.005)	0.0342*** (0.011)	0.0131 (0.010)	0.0154 (0.010)	0.0115 (0.011)	-0.0094 (0.011)
최저임금 수급여부 (미수급=0, 수급=1)	-0.0209 (0.015)	-0.0130 (0.014)	-0.0111 (0.025)	-0.0176 (0.024)	0.0242 (0.031)	-0.0106 (0.047)	-0.0941 (0.061)
연도더미*최저임금 수급여부	-0.0044 (0.019)	-0.0176 (0.017)	-0.0164 (0.031)	-0.0257 (0.031)	-0.0922** (0.039)	-0.0487 (0.055)	0.1287* (0.068)
Constant	5.6880*** (0.062)	3.5140*** (0.063)	4.8751*** (0.138)	1.9724*** (0.404)	1.0759** (0.484)	2.1213*** (0.545)	4.6441*** (0.292)
Observations	8,464	8,464	2,011	1,912	1,638	1,518	1,385
Number of pid	5,502	5,502	1,586	1,575	1,374	1,244	1,018

주: *** p<0.01, ** p<0.05, * p<0.1

자료: KLIPS 20~22차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비를 유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의한 양(+)의 결과를 기대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정해 본 결과, 최저임금인상은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근로자의 소속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지 못한 연구의 한계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이행과정을 살펴보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적시하고 추후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

V. 결론

최저임금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4%, 2019년은 전년 대비 10.9%가 결정되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증가와 소비,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의 진작을 가져왔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분위별 효과를 통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불평등의 완화라는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파악한다. 회고적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상하 10%를 범위로 최저임금 미만, 수급, 초과로 구분하였다.

최저임금 수급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임시직에서 최저임금 수급대상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수급자 비율도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미만 그룹에 속하는 비중도 50% 이상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증분석결과 2018년 최저임금인상은 가구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수급가구의 효과 역시 가구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위별 소득증대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1분위와 4분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2분위, 3분위, 5분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역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인상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분석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임근근로자 가구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분위별 효과에서는 3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오히려 5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은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근로자의 소속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지 못한 연구의 한계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이행과정을 살펴보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적시하고 추후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정진호·남재량·김주영·전영준(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오상봉(2015),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조은영·김상미(2018),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분석”,
- 조경엽(201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 황희영(2019), “최저임금제도가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경호·김지환·최지훈(2019),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제42권 제2호, pp.63~99.
- 황선웅(2019),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분포에 미친 효과”
- Sabia, J. J., “Minimum Wage and Gross Domestic Product”,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33(4), 2015a, pp.587-605.
- Sabia, J. J., “Do Minimum Wages Stimulate Productivity and Growth?”, IZA World of Labor, 2015b.